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. 6. 17. 2009고단362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김상문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정무식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금 100,000원을 추징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